

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사례

1. 가업상속공제 (상증세법 18조 2)
2.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(조특법 제30조 6)


발표자 : 이 종 훈 수석연구원

(25. 11. 24)

1. 가업상속공제 (상증세법 18조 2)

피상속인
60세 이상 & 거주자 & 부모

상속받는 **가업주식**에 대해
상속세 비과세



상속인
18세 이상 & 거주자 & 자녀

㉠ 10년 이상 **계속**하여 **경영**

10년 이상 **계속**하여 **지분 40% 이상**
(특관자 포함)

ex) 5년 전 증여 받거나, 양수, 증자한 주식은 해당 X
→ **2022. 1. 5 기재부 예규 --> 변경**
(보유기간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가능)
단, 최소 40%는 10년 이상 보유해야

* 포괄양수도 관계없이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

㉢ 일정기간 **대표이사** 재직 요건 (1개 충족 必)

가, 10년 이상 유지
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
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재직)

나. 가업기간 중 50% 이상

다.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

*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

* 비과세 한도

| 가업영위기간 | 공제한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0년 ~ 20년 | 300억 |
| 20년 ~ 30년 | 400억 |
| 30년 이상 | 600억 |

* **사업무관자산 공제 배제**

㉠ 상속개시일 전 **2년 이상** 가업에 종사

* 피상속인 65세 이전 사망, 천재지변으로 사망 시
* 상속인 병역, 요양, 학업 등 사유 존재 시
→ 예외 인정

㉢ 상속세 **신고기한**까지 임원 등재

㉢ 신고기한부터 **2년 내** 대표이사 등재

* 자녀 2이상 공동상속 허용 (한도는 동일, 요건충족 시)

2. 증여세 과세특례 (조특법 제30조 6)

증여자
60세 이상 & 거주자 & 부모

증여받는 **가업주식**에 대해
공제액 & 특례세율

수증자
18세 이상 & 거주자 & 자녀

㉠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

10년 이상 계속하여 지분 40% 이상
(특관자 포함)

㉡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추가
(25. 2. 28 개정)

가. 가업기간 중 50% 이상

나.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

㉢ 부, 모 중 한쪽만 인정

* 특례세율

| 주식가액 | 공제한도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10억 |
| ~ 120억 | 10% |
| 120억 초과 | 20% |

㉠ 증여세 신고기한 내 가업에 종사(실질)

* 수증자, 또는 그 배우자

* 승계 위해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 가능

㉡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
(공동대표 가능)

㉢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 유지
(취임일로부터 x)

3. 조건 및 사후관리

상속공제, 증여특례 공통

- 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
- ② 자산총액 5천억 미만
- ③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 5천억 미만
- ④ **불가 업종**
부동산임대업, 전문직서비스업 등
- ⑤ **불가 기업**
조세포탈, 회계부정 → 징역형
외감법에 따른 허위 공시
개인기업 (상속공제만 가능)

3. 조건 및 사후관리

가업상속공제

가. 가업용 자산의 40% 이상 처분, 임대하는 경우

나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* 1년 이상 휴업, 폐업, 업종변경(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가능),
대표이사 종사 X

다.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

- 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
- ㉡ 상속인이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지분을 감소
- ㉢ **상속인의 특관자**가 주식을 처분,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* 상속인이 주식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예외 인정하나
최대주주에 해당해야 함

라. 5년통산 **정규직 근로자 수**가 기준고용인원의 **90%** 미달

* 기준고용인원 : 상속개시일 직전 2개년도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

특례증여

- 가-1.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(3개월) 내 가업에 종사 X,
- 가-2.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X
- 가-3.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X

나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* 1년이상 휴업(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), 폐업, 업종변경

다. **수증자의 지분**(지분율, 주식수 모두 포함)이 **감소**되는 경우

- ㉠ 수증자가 특례증여 받은 주식을 처분
- ㉡ 수증자가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지분율 감소
- ㉢ **수증자의 특관자**가 주식을 처분,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
- ㉣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

라. **고용유지 조건 X**

사후관리 요건 미 충족 시 → 일반 상속세, 증여세 조건으로 과세 & 가산세

※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

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[별표] <개정 2023. 2. 28.>

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(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

1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

|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| 가업 해당 업종 |
|--|---|
| 가. 농업, 임업 및 어업 (01 ~ 03) | 작물재배업(011)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(01123)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[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및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자산의 가액] ÷ (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) |
| 나. 광업(05 ~ 08) | 광업 전체 |
| 다. 제조업(10 ~ 33) | 제조업 전체.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(사업장이 국내 또는 「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)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1)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(고안·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)할 것 2)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)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|
| 라.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, 환경정화 및 복원업(37 ~ 39) | 하수·폐기물 처리(재활용을 포함한다), 원료 재생,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|
| 마. 건설업(41 ~ 42) | 건설업 전체 |
| 바. 도매 및 소매업 (45 ~ 47) | 도매 및 소매업 전체 |
| 사. 운수업(49 ~ 52) | 여객운송업[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(49), 수상 운송업(50), 항공 운송업(51)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] |
| 아. 숙박 및 음식점업 (55 ~ 56) | 음식점 및 주점업(56) 중 음식점업(561)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자. 정보통신업 (58 ~ 63) | 출판업(58) 영상·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(59). 다만,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(59142)은 제외한다. 방송업(60) 우편 및 통신업(61) 중 전기통신업(612)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62) 정보서비스업(63) |
| 차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 ~ 73) | 연구개발업(70) 전문서비스업(71) 중 광고업(713)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(714)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72)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729)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3) 중 전문디자인업(732) |
| 카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 ~ 75) |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(74)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, 소독,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(7422) 사업지원 서비스업(75)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(751,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),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(7531), 보안시스템 서비스업(7532)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(75991),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(75992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 |
| 타. 임대업 : 부동산 제외 (76) | 무형재산권 임대업(764,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|
| 파. 교육서비스업(85) | 교육 서비스업(85) 중 유아 교육기관(8511), 사회교육시설(8564), 직원훈련기관(8565),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(85669) |
| 하. 사회복지 서비스업 (87) |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|
| 거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90 ~ 91) | 창작,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)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901), 도서관,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(902). 다만, 독서실 운영업(90212)은 제외한다. |
| 너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94 ~ 96) | 기타 개인 서비스업(96)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(96993) |

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음

- 실제 경영활동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설립 시 산업분류코드를 잘못 설정한 경우
- 재무제표 결산 시 제품, 상품, 용역 매출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
(전략, 전술 부재)

👉 자녀법인(특정법인) 설립 등을 통한 승계전략 활용

4. 일반 상속/증여 vs 상속공제/특례증여 세부담 차이

*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, 사업무관자산 0% 가정

| 일반상속 | 구 분 | 가업상속공제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700억 | 상속재산가액 | 700억 |
| 0억 | 가업상속공제액 | 600억 |
| 5억 | 일괄공제 | 5억 |
| 695억 | 상속세 과세표준 | 95억 |
| 343억 | 세율 (50%) | 43억 |
| 10.3억 | 신고세액공제 | 1.3억 |
| 333억 | 납부할 세액 | 42억 |

| 일반증여 | 구 분 | 특례증여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00억 | 증여재산가액 | 100억 |
| 0.5억 | 증여공제 | 10억 |
| 100억 | 증여세 과세표준 | 90억 |
| 45억 | 세율 (50%) 특례세율(10%,20%) | 9.0억 |
| 1.4억 | 신고세액공제 | |
| 43.8억 | 납부할 세액 | 9억 |

VS

양도세이월과세규정

사업무관자산비율

V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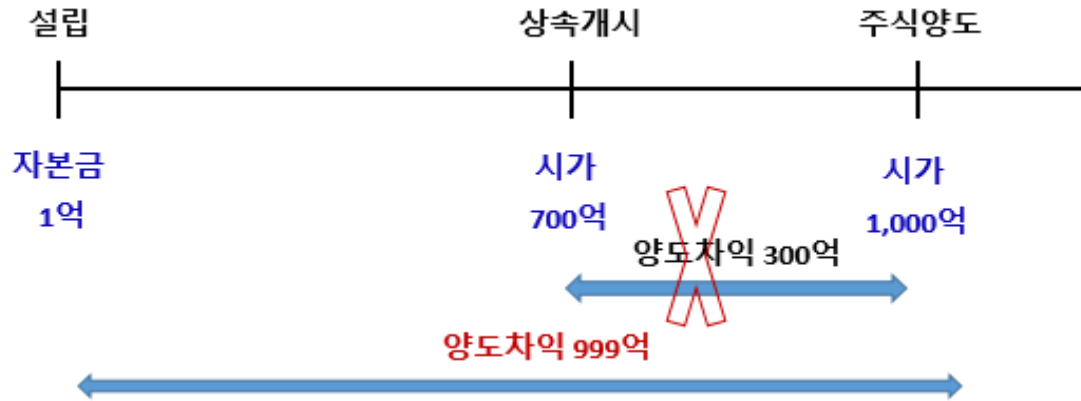
(기간 관계없이) 향후 상속자산에 포함

→ 현재 주가수준 및 향후 주가추이 판단

사업무관자산비율

5. 주의사항

① 양도세이월과세규정



→ 승계 연차별 이월과세비중 축소 정책 必

② 사업무관자산

* 비사업용토지, 임대부동산, 가지급금, 예금, 주식, 보험, 채권 등
금융재산, 과다보유현금 등

→ 전체 자산 중에서 사업무관자산비중만큼 일반세율 적용

→ 사업무관자산 축소 전략 必

→ 금융자산의 일정부분은 사업용 인정 必

③ 현재 주가수준 및 향후 주가 추이 판단

상속발생

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년도 | 25년 | 26년 | 27년 | 28년 | 29년 | 30년 | 31년 | 32년 | 33년 | 34년 | 35년 | 36년 | 37년 | 38년 | 39년 | 40년 |
| 대표지분 | 30억 | 35억 | 38억 | 42억 | 44억 | 48억 | 52억 | 55억 | 59억 | 62억 | 66억 | 69억 | 73억 | 76억 | 80억 | 84억 |

※ 2040년 상속 발생 가정 시 : 상속재산 84억 → 상속세 37.4억

VS

※ 2025년도 지분 50% 자녀에게 가업증여 특례 활용



상속발생

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이 대표 지분 | 15억 | 18억 | 19억 | 21억 | 22억 | 24억 | 26억 | 28억 | 29억 | 31억 | 33억 | 35억 | 36억 | 38억 | 40억 | 42억 |
| 자녀지분 | 15억 | 18억 | 19억 | 21억 | 22억 | 24억 | 26억 | 28억 | 29억 | 31억 | 33억 | 35억 | 36억 | 38억 | 40억 | 42억 |

👉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서 활용

* 15억에 대한 특례 증여세 0.5억

※ 2040년 상속 발생 가정 시 : 상속재산 42억 + 특례증여주식 15억 = 57억 → 23.9억

상속세 23.9억 - 특례증여세 기납액 0.5억 → 상속세 23.4억

6. 기업증여특례, 상속공제 효과적 활용 사례 I

| 특례증여 실행 | | ① 증여특례 ◦ → 상속공제 | | ② 증여특례 x → 상속공제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식가치 | 10,000,000,000 | 주식가치 | 30,000,000,000 | 주식가치 | 30,000,000,000 |
| 업무무관비율 | 10% | 업무무관비율 | 50% | 업무무관비율 | 50% |
| 업무관련비율 | 90% | 업무관련비율 | 50% | 업무관련비율 | 50% |
| 업무무관자산 | 1,000,000,000 | 업무무관자산 | 15,000,000,000 | 업무무관자산 | 15,000,000,000 |
| 업무용자산 | 9,000,000,000 | 업무용자산 | 15,000,000,000 | 업무용자산 | 15,000,000,000 |
| 증여세 과세가액 | 10,000,000,000 | 상속세 과세가액 | 10,000,000,000 | 상속세 과세가액 | 30,000,000,000 |
| 특례 증여세 대상 (세율 10%) | 9,000,000,000 800,000,000 | 기업상속공제대상 (세율 0%) | 5,000,000,000 | 기업상속공제대상 (세율 0%) | 15,000,000,000 |
| 일반 증여세 대상 (세율 10~50%) | 1,000,000,000 240,000,000 | 일반 상속세 대상 (세율 10~50%) | 5,000,000,000 2,040,000,000 | 일반 상속세 대상 (세율 10~50%) | 15,000,000,000 7,040,000,000 |
| 납부할 증여세 | 1,040,000,000 | 기 납부 특례증여세 | 800,000,000 | 기 납부 특례증여세 | 0 |
| | | 납부할 상속세 | 1,240,000,000 | 납부할 상속세 | 7,040,000,000 |
| | | | 6.80% | | 23.5% |

30년 후

사후관리
5년 준수

VS

-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산 취득형태
설립 → 자가공장/사무실 마련 → 임대 부동산 취득 → 금융자산 취득

세금차액 58억 (5.7배)

6. 가업증여특례, 상속공제 효과적 활용 사례 II

| 특례증여 실행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주식가치 | 10,000,000,000 |
| 업무무관비율 | 10% |
| 업무관련비율 | 90% |
| 업무무관자산 | 1,000,000,000 |
| 업무용자산 | 9,000,000,000 |
| 증여세 과세가액 | 10,000,000,000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례 증여세 대상 (세율 10%) | 9,000,000,000 800,000,000 |
| 일반 증여세 대상 (세율 10~50%) | 1,000,000,000 240,000,000 |
| 납부할 증여세 | 1,040,000,000 |

30년 후



사후관리
5년 준수

| 증여특례 ○ → 상속공제 x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주식가치 | 30,000,000,000 |
| 업무무관비율 | 100% |
| 업무관련비율 | 0% |
| 업무무관자산 | 30,000,000,000 |
| 업무용자산 | 0 |
| 상속세 과세가액 | 10,000,000,000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업상속공제대상 (세율 0%) | 0 |
| 일반 상속세 대상 (세율 10~50%) | 10,000,000,000 4,540,000,000 |
| 기 납부 특례증여세 | 800,000,000 |
| 납부할 상속세 | 3,740,000,000 15.13% |

VS

| 증여특례 x → 상속공제 x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주식가치 | 30,000,000,000 |
| 업무무관비율 | 100% |
| 업무관련비율 | 0% |
| 업무무관자산 | 30,000,000,000 |
| 업무용자산 | 0 |
| 상속세 과세가액 | 30,000,000,000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업상속공제대상 (세율 0%) | 0 |
| 일반 상속세 대상 (세율 10~50%) | 30,000,000,000 14,540,000,000 |
| 기 납부 특례증여세 | 0 |
| 납부할 상속세 | 14,540,000,000 48.5% |

- 자녀 승계가 어려운 경우 (전문직, 공무원, 능력/자질, 산업성숙도 등)
- but, 자녀에게 부동산은 물려주고 싶은 경우 (안정적 임대수입) → 임대법인 전환

세금차액 108억 (3.9배)

6. 가업증여특례, 상속공제 효과적 활용 사례 법적근거
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6 (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) ⑨항, ⑩항

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

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
<개정 2016. 2. 5., 2020. 2. 11., 2023. 2. 28., 2025. 2. 28.>

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자산상당액”이란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

이 경우 ‘상속개시일’은 ‘증여일’로 본다. <신설 2014. 2. 21., 2020. 2. 11., 2023. 2. 28., 2024. 2. 29.>